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 종목의 명칭 : 보험료납입유예특약

2. 적용대상

보험료 납입유예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모든 조건에 해당되어야 한다.

가. 외국통화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보험계약

나. 보험계약일로부터 3년이상 경과한 보험계약

다. 외국통화에 대한 원화의 **평균환율상승률이 10.00%이상일 경우**

라. 보험료 납입유예 신청일까지 납입해야 될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된 경우

3. **평균환율상승률** 계산에 관한 사항

가. 회사는 월 기준환율과 연 기준환율 변동을 산술 평균하여 **평균환율상승률**로 적용한다.

$$\text{평균환율상승률}(\%) = \frac{A+B}{2} \times 100(\%)$$

▪ A = $\frac{\text{당월 첫번째 영업일 기준환율} - \text{직전월 첫번째 영업일 기준환율}}{\text{직전월 첫번째 영업일 기준환율}}$

▪ B = $\frac{\text{당해년도당월 첫번째 영업일 기준환율} - \text{직전년도 해당월 첫번째 영업일 기준환율}}{\text{직전년도 해당월 첫번째 영업일 기준환율}}$

주) 당월: **평균환율상승률** 산출시점이 되는 월

직전월: **평균환율상승률** 산출시점의 전월

직전년도 해당월: **평균환율상승률** 산출시점의 직전 1년전 해당월

기준환율: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_ecos.bok.or.kr)에 공시된 해당 외국통화의 기준환율

나. 회사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평균환율상승률**과 **평균환율상승률** 산출방법에 대하여 공시한다.

4. 보험료 납입유예 신청 및 유예기간

가.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유예신청을 보험료 납입기일 15일전까지 서면으로 회사에 신청하여야 한다.

- 나.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은 보험료 납입유예 신청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보험료 납입기일부터 1년으로 한다.
 - 다. “나” 항에도 불구하고 납입유예기간 종료시점에서 “2. 적용대상” 조건에 해당할 경우 1회에 한하여 보험료 납입유예를 연장 신청할 수 있다.
5.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종료 및 새로운 보험료 납입기일 통지
- 가. 회사는 납입유예기간 종료 1개월전까지 계약자에게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종료일 및 새로운 보험료 납입기일을 통지한다.
 - 나. 새로운 보험료 납입기일은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로 한다.
 - 다.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중 언제든지 보험료 납입유예를 철회하고 보험료를 납입 할 수 있다.
6. 보험기간, 납입기간 및 연금개시나이 변경에 관한 사항
- 이 특약이 부가된 경우 주계약의 보험기간(연금보험의 경우 제 1 보험기간), 납입기간 및 연금개시나이(연금보험에 해당)는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가. 보험기간은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만큼 연장한다.
 - 나. 납입기간 및 연금개시나이는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만큼 순연한다.
 - 다. “가” 항 또는 “나” 항의 적용에 따라 변경후의 보험기간, 납입기간 또는 연금개시나이가 주계약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범위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유예 신청을 할 수 없다.
 - 라. “가” 항 또는 “나” 항에도 불구하고 단기납의 경우에는 계약자 신청에 따라 보험기간 및 연금개시나이를 변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중 보험계약의 효력
- 가.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중에는 보험계약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주계약 적립금에서 필요한 주계약 위험보험료와 주계약 납입후 유지비를 충당한다.
 - 나.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중 주계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한다.
8. 주계약 해약환급금 계산시 경과기간 적용에 관한 사항
- 가. 주계약 해약환급금 계산시 납입경과기간월수에는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은 적용하지 않는다.
 - 나. 미상각 신계약비 상각기간은 보험료 납입유예기간만큼 순연 한다.

9. 주계약 순보험료 계산에 관한 사항

주계약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순보험료 계산에 관한 사항” 중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은 보험료 납입유예기간만큼 순연 한다.

10. 주계약 보험년도말 적립금 계산에 관한 사항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중의 적립금 계산은 보험료 납입유예 신청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주계약의 계약 해당일부터 매월 계약 해당일날 주계약 적립금에서 주계약 위험보험료와 주계약 납입후 유지비를 차감하고, 주계약에서 정한 이율과 방법에 의해 부리 적립 한다.

11. 기존 계약의 소급적용에 관한 사항

회사는 이 상품의 판매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도 계약자가 납입유예를 신청할 경우 ‘2. 적용대상’ 및 ‘3. 평균환율상승률 계산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다.

12. 기타

기타사항은 주계약 사업방법서를 따른다.